

【 주간 이슈 】

일본 보험법 시행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

김경환 수석연구위원

- 일본에서는 보험법이 4월 1일자로 시행됨으로써 보험사업뿐만 아니라 공제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험계약법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일본 보험법의 제정·시행은 1899년에 상법이 제정된 지 100여년만의 일로서, 그동안 분쟁 발생시 많은 경우 판례에 의존하여 처리되어 오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됨.
- 일본 보험법은 보험계약 이외에 공제계약 등을 통일적으로 규제함은 물론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많은 조항이 개선되었음.
 - 우선 최근 들어 널리 보급되어 중요성이 높아진 상해질병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계약과 구분함.
 -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시기, ‘개입권’제도, 피보험자에 의한 해지청구 제도 등과 같은 조항이 새롭게 도입됨.
 - 도덕적 해이에 의해 보험계약이 불건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대사유 해지 제도 등도 신설되었음.
- 일본 보험법은 우리나라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 체계의 정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상법 보험편을 상법에서 독립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소비자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공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험계약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켜 규제함으로써 일원화된 감독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본고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문제 제기

- 일본에서는 1899년에 상법이 제정된 후 100여 년 만에 전면적인 손질을 통해 독립된 법률인 보험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보험법이 독립된 법률로 제정되게 된 배경에는 지난 100여 년 동안 1921년에 한 차례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을 뿐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임.
 - 기존 상법에는 상해질병보험과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었고, 구시대의 이론에 기초하여 경직적임은 물론 현대 이론 및 실무에도 적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 기존 상법은 표기 면에서도 카타가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어체로 되어 있어 읽기가 불편하였음.
 - 보험법 제정은 2006년 9월에 법무대신의 요청으로 법제심의위원회가 보험법 부회를 설치한 데서 시작되어, 법무성이 2008년 3월 5일에 중의원에 제출한 법률안이 같은 해 5월 30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완료함.
 - 보험법부회는 2006년 11월부터 조사·심의를 시작하였는데, 2008년 2월 13일에 개최된 법제심의회 회의에서 동 부회가 작성한 「보험법 개정에 관한 요강」이 원안으로 채택된 후 같은 날에 법무대신에게 답신으로 제출됨.
- 우리나라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법무부에 의해 마련되어 2008년 8월 6일에 국회에 제출된 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서 상법 보험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보험의 건전성 확보,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 반영, 장애인과 유족 보호 등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보험법 시행의 의의와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 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우리나라의 보험 관련 법제가 기본 틀에서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험법이 제정·시행되게 된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2. 일본 보험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가.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보험법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험계약 일반이라고 함으로써 보험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이 가능해짐.

- 기존에는 보험자의 속성에 따라서 상법, 각종 공제의 근거법 등 규율하는 법
 률이 달랐음.
- 보험법의 일부 규정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공제계약에도 적용됨.
 - 보험법은 원칙적으로 2010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되는 계약에 적용되나,
 보험법의 일부 규정은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된 계약에도 적용됨.
 -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2010년 4월 1일 이후
 에 새롭게 특약을 중도에 부가한 경우와 실효된 계약을 부활한 경우 그 특
 약과 부활 후 계약에도 보험법이 적용됨.

<상해질병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의 신설>

□ 상법에는 상해질병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보험법에 상해질병정액보험
계약과 상해질병손해보험계약으로 나누어 규정을 신설함.

- 상법 제정 당시에는 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나 실무상 계약 체결이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 등에 맡겨두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
- 최근 들어서는 상해질병보험계약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전형적인 보험계약이
 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를 신설함.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한 규정의 정비>

□ (계약체결시 고지에 대한 규정의 정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과거에는 보험계
약자가 스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던 법규를 보험자의
질문에 답변하면 충분하도록 개정함.

- 보험매개자(보험모집인)에 의한 고지방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보험금부의 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의 신설) 약관에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기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사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자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함.
 - 보험금 지급 시기는 지금까지 약관의 규정에 맡겨져 왔는데, 최고재판례에서 그 약관의 일부가 효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약관 규정의 애매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음.
- ('개입권' 제도 신설)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보험금 수령인이 계약관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금 수령인의 생활보장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망보험계약 등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해서 해지되는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인은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해지권자에게 지급하여 해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망보험계약 등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함.
- (피보험자에 의한 해지청구 제도 신설) 사망보험계약 등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보험자가 스스로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도덕적 해이에 직면한 경우 또는 이혼 등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 후 신분관계가 변동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함.
- (편면적 강행 규정 도입)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령인에 있어서 보험법상의 규정보다도 불리한 내용의 약관규정을 무효로 함.
 - 공익에 관한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당연히 무효로 되는데(민법 제90조 참조), 상법에 이번 규정의 도입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특약함에 있어서 기준의 명확화가 도모될 수 있음.

<중대사유 해지 제도 신설>

-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금 청구시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것이라 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약의 건전성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계약자 행동을 막아 보험자 또는 공제자가 계약자와 상호신뢰를 전제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보험법에서는 이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에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하는 취지가 명확해짐.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 피보험자(가해자)에 의한 불법행위 등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피해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험금부 청구권에 대해서 선취 특권을 부여함.
 - 피보험자의 도산에 의해서 피해자가 충분히 피해로부터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보험금부로부터 변제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해자의 우선적 지위를 확보해주는 것임.

<보험금 수령인의 변경에 대한 규정의 정비>

- 기존 상법 규정에서 생명보험 보험금 수령인의 변경과 관련한 규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보험법에서 이를 전면 개선함과 더불어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신설함.
 -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시에 보험금 수령인의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금 수령인의 변경권을 갖도록 함.
 - 보험금 수령인 변경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보험자인 것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의사표시의 통지가 보험자에 도달한 때는 당해 통지의 발신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유언에 의한 보험금 수령인의 변경을 인정함과 더불어 유언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함.

나. 시행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시행의 영향>

- 보험법은 시행일(201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나, 아래의 조항은 시행전에 가입되어 있던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취급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계약의 보험료와 보험금액에 대한 영향은 없음.
 - 보험금 등의 지급기한(보험법 제52조, 제81조)
 - 지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일수 등을 약관에 기재함.
 -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보험법 제57조, 제86조)
 - 사기 목적의 사고 유발, 청구시의 사기 행위, 또는 양자와 동등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험금 등의 수령인에 의한 보험계약의 계속(보험법 제60조~제62조, 제89조~제91조)
 - 보험계약의 차압과 계약자의 파산 등에 의해 그 채권자 등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한 경우에 보험금 수령인이 일정한 절차를 취함으로써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됨.
 - 입원과 수술 등의 지급사유에 대해서 “책임개시일 전에 발병한 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약관에 규정함.
 - 책임개시일 전의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고 충분하게 고지를 하고서 계약에 가입한 경우(사실의 일부만 고지한 경우를 제외함)
 - 책임개시일 전의 질환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 등이 없고, 자신도 발병했다는 인식·자각도 없는 경우
- 모집인 등의 교육을 포함한 사내대응이 중요해지며, 보험법 시행 후에는 판매채널이 모집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의 계약·고객의 관리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매채널·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김.
- 공제 입장에서는 기존에 민법만 적용받았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음¹⁾.
 - 고지의 방법이 이제까지의 자발신고의무에서 질문응답의무로 변경

1) 조직 및 감독에 관한 법의 적용은 변함이 없음.

- 공제금 등의 지급 기한의 명확화
- 피공제자에 의한 계약 해지 청구 가능
-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 공제자에 의한 계약 해지 가능
- 중복계약이 있는 경우 지급 방식을 독립책임전액방식으로 변경
- 채권자 등에 의한 해지에 개입할 권리 도입
- 피해자에게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선취특권 부여
-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대응>

□ 보험회사들은 우선 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리고 Q&A 등을 작성하여 계약자 등의 의문점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보통보험약관 및 특약을 개정하여 새로 제정된 보험법에 부합되게 하였음.

- 「보험법 시행에 따른 취급 변경에 관한 특약(보험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 대응용)」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음.
- 또한 보험 인수와 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업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바이어스 가이드라인』과 같은 책자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

□ 이번 보험법의 제정으로 처음으로 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공제조합의 경우 4대 공제단체²⁾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음.

- 각 공제단체는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계약자와 이용자에 대해서 새로 제정된 보험법의 핵심사항과 상세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시작함.
- 4대 공제단체는 특히 약관을 변경하고, 공제금 지급도 표준적인 지급기한을 정하였음.
 - JA공제연의 경우 「공제규정」, 「공제사업실시방법서」, 「공제약관」, 「공제기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변경했으며, 그 규정에 따라서 적정한 보급추진·인수·공제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사무절차와 시스템 등을 변경·개선하였음.

2) 4대 공제단체는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약칭 JA공제연),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약칭 전노제), 전국생협연, 코오프(CO·OP)공제연임.

3.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험계약 관련 법률 비교

가. 보험분류 방법에 따른 보험 규제 비교

□ 국제적으로 보험 관련 법률 체계를 비교하여 보면 독일과 프랑스 등과 같은 대륙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보험업법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보험계약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보험계약법을 상법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체계를 만들었음.

<표 1> 보험규제 법률 체계 비교

	보험업법	보험계약 관련 법률					
		생명보험	손해보험	인보험 ¹⁾	재산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한국	보험업법		상법	상법			
일본	보험업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중국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제3분야)	보험법 (제3분야)
독일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	
프랑스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			
영국	FSMA	FSA핸드북	FSA핸드북				
미국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주 : 1) 인보험은 상해와 질병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 사망, 생존, 상해, 질병, 후유장해, 연금보험을 포함함.

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험계약 관련 법률 체계 비교

<적용 범위>

□ 일본의 경우 공제까지 포함하여 보험계약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제는 보험계약에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보험계약, 공제계약, 기타 어떠한 계약인가를 묻지 않고 일반적인 보험계약을 정의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보험계약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는 데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은 상호보험에 대해서 상법 보험편의 적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음.
- 적용의 실질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나, 공제가 보험계약 인지 여부를 인정하는 데서 차이가 있음.

<계약의 구분>

-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정액보험으로 구분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만 구분하고 있음.
 - 일본은 상해질병보험을 상해질병손해보험과 상해질병정액보험으로 구분하여 상해질병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장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특칙으로 정하고, 상해질병정액보험은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상해보험을 인보험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을 정하고 별도로 계약을 추가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통칙에서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을 정함과 아울러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의 신설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을 구분하면서 상해질병정액보험을 분리했으나 우리나라는 인보험 장에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서 인보험 장에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의 신설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연금보험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안도 제출되어 있음.

<기타 사항>

- 일본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정액보험을 규정하는 각각의 장에서 성립, 효력, 보험급부, 종료라는 동일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통칙을 두어 정리하고 있음.

4. 시사점

- 우리나라 상법 보험편은 일본과 달리 1991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험법 제정을 계기로 보완·신설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나, 법률 체계 등의 측면에서는 전면적 보완이 필요함.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서도 많은 조항의 보완·신설이 있으므로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법률 체계의 측면에서 얻는 시사점이 중요함.

- 상법 보험편을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독립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보험계약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실무적으로도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별도의 법률로 독립시킴으로써 보험계약법의 위상을 정립하고 일반인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별도의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법률 소관부처를 일치시킴으로써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용이해지도록 하여 판례 등에 의존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 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법규의 중복 및 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함.

- 그 동안 보험계약법의 범위에서 벗어나 적용되지 않고 있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기능이 동일한 보험과 공제간 규제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공제에 대한 법률 적용을 준용 조항을 통하기보다는 보험계약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통해서 공제를 보험계약의 일부로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 검토
 - 현재의 상법 개정안으로도 공제에 대한 법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엄밀한 적용을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일원화의 연장선상에서 공제 등 유사보험을 보험의 규제 영역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함.
 - 다만 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보험업법으로 이관하여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KiRi